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91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문진석 · 이정문 · 이재관
강준현 · 김병주 · 박희승
안태준 · 전현희 · 윤준병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제59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휴직·휴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할청은 임용권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복무) ① · ② (생 략)	제55조(복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③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제 59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준용 되는 규정에 따른 휴직·휴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④ 관할청은 임용권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7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5항까지의-----

-----.